



**DRB** 동일고무벨트

# Supplier Code of Conduct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Contents

## 1. 개요

- a. 목적
- b. 대상
- c. 책임과 역할

## 2. 윤리

- a. 투명경영, 반부패
- b. 이해상충, 불공정 거래 방지
- c. 위조부품 방지
- d. 정보, 지적 재산 보호
- e. 수출제한, 제재 준수
- f. 책임 있는 자재 구매

## 3. 환경

- a.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b. 수자원 관리
- c. 대기오염물질 관리
- d. 순환자원, 폐기물 관리
- e. 화학물질 관리
- f. 생물다양성 보호, 산림파괴 금지
- g. 현지 주민에 대한 환경 위험 관리

## 4. 기후 변화 대응

- a. 기후 변화 대응
- b.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c. 에너지 관리

## 5. 노동/인권

- a. 아동 노동 금지
- b. 강제 노동 금지
- c. 차별, 괴롭힘 금지
- d. 임금, 복리후생 제공
- e. 근로시간 관리
- f.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보장
- g. 윤리적인 채용

## 6. 안전/보건

- a.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 b. 기계·기구·설비 안전 관리
- c. 비상상황 대응
- d. 사고 관리
- e. 보건 관리
- f. 안전 진단
- g. 공급인의 안전 및 보건

## 7. 고객 보호

- a. 고객 존중과 보호

## 8. 품질 관리

- a. 제품 품질 관리

## 9. 경영시스템

- a. 기업 성명서 공시
- b. 담당자 선임, 교육 및 소통
- c. 정보 관리
- d. 고충처리 제도 운영
- e. 규범 준수
- f. 리스크 점검
- g. 구제수단 마련

## 10. 공급망 관리

- a. 공급망 실사
- b. 외부공급자 관리
- c. 공급망 다양성
- d. 상생 경영

## 11. 지역사회 공헌

- a. 글로벌 기업시민 역할 강화

#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 1. 개요

### a. 목적

DRB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외부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으며,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령(부패, 경제제재, 강제노동, 안전/보건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강령을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인권 및 환경에 관한 공급망 관계법령, ESG 관련 지침 등 최근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강령에서 권장 및 요구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령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DRB는 외부공급자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b. 대상

DRB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외부공급자(이하 "외부공급자")는 본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인 모든 외부공급자는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 합니다.

### c. 책임과 역할

DRB의 외부공급자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외부공급자 행동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DRB 및 DRB의 위탁을 받은 제3자 기관은 외부공급자가 본 행동 강령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DRB는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외부공급자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강령 준수 여부가 외부공급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본 행동강령을 위반한 외부공급자가 적절한 개선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DRB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행동강령은 외부공급자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강령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 될 수 있습니다.

---

##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본 행동강령은 DRB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DRB 담당부서를 통해 본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DRB는 외부공급자의 구성원이 본 행동강령과 관련된 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음성, 영상, 서면 등)과 방식(국문, 영문 등)을 이용하여 외부공급자가 본 행동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외부공급자가 거래업체(하위 외부공급자) 등 공급망 전반에 본 행동강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입니다.

---

#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 2. 윤리

### a. 투명경영, 반부패

- a1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a2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자금세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 a3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b. 이해상충, 불공정 거래 방지

- b1 정해진 업무 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b2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b3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b4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b5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 b6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 b7 경쟁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c. 위조부품 방지

- c1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c2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 c3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 d. 정보, 지적 재산 보호

- d.1 고객사 및 공급망 전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d.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d.3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d.4 고객사 및 공급망 전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외부공급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e. 수출제한, 제재 준수

- e.1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e.2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 e.3 수출제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DRB의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 f. 책임 있는 자재 구매

- f.1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DRB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조달하는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f.2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f.3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sup>1</sup> 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과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f.4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과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sup>2</sup>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f.5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과정에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 확인하거나 대외인증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sup>1</sup>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서 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아동노동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광물 수출을 통한 자금을 내전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sup>2</sup>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사용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015년 유럽의회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 3. 환경

### a.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a1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a2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경영시스템<sup>3</sup>을 운영해야 합니다.

### b. 수자원 관리

- b1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b2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 c. 대기오염물질 관리

- c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c2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d. 순환자원, 폐기물 관리

- d1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d2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d3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e. 화학물질 관리

- e1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e2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sup>4</sup>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sup>3</sup>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제3자 기관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음)

<sup>4</sup> EU의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산업안전보건법(제7장 1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사항 등

##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 f. 생물다양성 보호, 산림파괴 금지

- f1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f2 지역사회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잠재적 산림파괴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하고, 산림파괴 현황이 확인되거나 산림파괴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g. 현지 주민에 대한 환경 위험 관리

- g1 소재국가에서의 생산활동 및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운송으로 인한 현지 주민에 대한 환경영향을체계적/주기적으로 평가/개선해야 합니다.
  - g2 경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현지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광물, 토지 등), 이주의 자유,유 무형의 문화훼손 등을 포함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민들에게 적절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 g3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이행해야 합니다.
-



### 4. 기후 변화 대응

#### a. 기후 변화 대응

- a1 기후변화 대응을 매우 중요한 의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환경보존에 힘쓰는 것은 외부공급자 기업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환경 경영과 제품 서비스 전반에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 a2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 외부공급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회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환경 이슈를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a3 국제 사회의 기후 관련 협약에 부합하는 목표에 맞춰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a4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 및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하며, 경영 활동, 제품 및 서비스와 미래경영 전략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 b.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b1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힘써야 합니다.
- b2 운영 및 물류 시스템을 위한 재생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원의 사용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 b3 재생 에너지원(태양광 패널 등)을 조달하거나 구축하는 경우, 사전 동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c. 에너지 관리

- c1 국제적인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c2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 5. 노동/인권

#### a. 아동 노동 금지

- a1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a2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a3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공급망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b. 강제 노동 금지

- b1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강제노동"이란 특정인이 불이행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형사적 제재에 따른 비자발적 재소자 노동 및 계약 노동을 포함합니다.
  - b2 DRB에 공급할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규제 적용 대상자나 법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하였거나 강제노동규제를 위반하여 공급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강제노동규제"에는 국제연합(UN), 미국(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정부 관계당국이 강제노동의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부과, 시행 또는 집행하는 법령, 시행령, 조례, 규칙 또는 조건(강제노동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가 제작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이 포함됩니다.
  - b3 공급망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를 실시하며, 해당 실사과정에는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공급자의 공급망을 매핑(mapping)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 업체 및 기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실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 외부공급자 행동 강령

---

- b4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이 명시된 행동규범을 제정합니다. 각 외부공급자는 행동강령을 제정함에 있어 공급망의 어떠한 단계에서든 DRB에 납품하는 물품의 제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제조된 원재료, 부품 등을 외부공급자가 공급받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 b5 임직원 및 거래업체(하위 외부공급자)들에게 행동강령 및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 b6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 계획을 진행시키고, 강제노동 이용 상황 및 그 시정 조치에 대한 정보를 DRB에 즉시 제공합니다.
  - b7 거래업체(하위 외부공급자)에게 동등한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검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업체(하위 외부공급자)가 각 행동강령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b8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b9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하위 외부공급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거래업체(하위 외부공급자)로 하여금 그 거래업체들에게서 동일한 약속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 b10 거래업체(하위 외부공급자)가 판매제품(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제품에 포함된 제품 포함)의 생산에 강제노동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업체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DRB에 알려야 합니다.
- c 차별, 괴롭힘 금지**
- c1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c2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c3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